

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3월 8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3월 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0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3년3월17일) 상정
- 제10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3년3월17일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예술과장 최인용)

□ 개정이유

- 박물관 건립과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 설치계획(2003. 1. 21)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박물관건립의 사업제안과 유치계획수립, 박물관의 공간계획과 환경조성 방안, 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등의 검토 및 시행에 따른 자문, 기타 발전적 연구를 위하여 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함(안 제7조의2제1항)
-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함(안 제7조의2제2항)
- 위원은 박물관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, 관련전문가,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인과 지역관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함(안 제7조의2제3항)
-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7조의2제5항)
- 위원회 회의 및 직무상 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의2제6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위원의 임기를 타 위원회와는 달리 3년으로 둔 이유는	○ 현황과약 등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3년으로 명시하였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6. 수정안의 요지

○ 별첨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3년 3월 17일

제안자 : 행정복지위원장

의안번호	제99호
의결연월일	2003.3.19 (제103회)

1. 수정이유

- 박물관건립과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박물관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자문 및 연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, 위원의 임기는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2년으로 하고,
- 제7조의2 위원회 구성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해촉사유 및 회의 개최일수 등을 삽입 내실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제목을 위원회운영으로 수정(안 제7조의2)
-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(안 제7조의제2제5항)
- 위원회 해촉 사유 신설(안 제7조의2제6항)
- 위원회 회의를 년2회 이상 개최토록 신설(안 제7조의2제7항)

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7조의2 제목 "위원회"를 "위원회 운영"으로 한다.

제7조2의제5항중 "3년"을 "2년"으로 한다.

제7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.

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
2.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때
3. 기타 박물관 사업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

⑦ 회의는 부천시박물관사업과 관련한 종합적인 자문과 발전적 연구를 위하여 연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시 시장의 요청으로 개최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7조의2(위원회) ① 박물관건립의 사업계획안과 유치계획, 박물관의 공간계획 및 환경조성방안,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의 검토 및 시행에 따른 자문, 기타 발전적인 연구를 위하여 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(이하"위원회")를 둔다.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추천한다</p> <p>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박물관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.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연구기관·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 3.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인 4. 지역관계자 등 <p>⑤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당해 사안의 추진기간 동안 관계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시의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7조의2(위원회운영) ①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2년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	<p><신 설></p>	<p>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</p> <p>2.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때</p> <p>3. 기타 박물관 사업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</p>
	<p><신 설></p>	<p>⑦ 회의는 부천시박물관 사업과 관련한 종합적인 자문과 발전적 연구를 위하여 연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시 시장의 요청으로 개최한다.</p>
<p><신 설></p>	<p>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직무상 출장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천시 위원회실비변상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⑧ (개정안과 같음)</p>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위원회) ① 박물관건립의 사업제안과 유치계획, 박물관의 공간계획 및 환경조성방안, 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등의 검토 및 시행에 따른 자문, 기타 발전적 연구를 위하여 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추천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박물관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2.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연구기관·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
3.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인
4. 지역관계자 등

⑤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당해 사안의 추진기간 동안 관계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시의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.

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직무상 출장 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신설></p>	<p>제7조의2(위원회) ① 박물관건립의 사업제안과 유치계획, 박물관의 공간계획 및 환경조성방안, 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등의 검토 및 시행에 따른 자문, 기타 발전적인 연구를 위해 박물관사업추진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추천한다.</p> <p>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박물관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.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연구기관·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 3.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1인 4. 지역관계자 등 <p>⑤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당해 사안의 추진기간 동안 관계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. 다만 시의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직무상 출장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